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(유치원)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-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-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: 송광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(유치원)

다. 기간: 2013년 3월 7일 ~ 3월 13일까지(7일간) 【근무시간이내】
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장소: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

나. 선거일시: 2013년 3월 19일 10:30
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: 1명

라. 선거인 명부 열람: 2013년 3월 8일 ~ 3월 18일(유치원)

2013년 3월 7일

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1. 2013